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27
----------	------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4. 4. 서울특별시청 제출
2. 회부일자 : 2017. 4. 6.
3.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4월 21일 상정(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양천 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양천 아이존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2층

- 시설규모 : 118평(전용면적 349.5m², 지상 2층, 법인소유)
- 개원일자 : 2009년 4월 24일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7. 1 ~ 2020.6.30)
- 위탁업무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17년 예산 : 395,025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4.24. ~ 2012.4.23. (3년 계약, 공개모집)
 - ※ 2012.4.24.~2012.6.30. 기간연장
- 2차 : 2012.7.1 ~ 2014.6.30 (2년, 재계약)
- 3차 : 2014.7.1 ~ 2017.6.30 (3년, 재계약)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직영으로 운영시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 대체를 위해추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장비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
적정(보건정책과 2017. 2.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2017. 3. 9.)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심의의 필요성

- 양천 아이존은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정신보건 시설로 현재 양천 아이존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 기관에 재위탁 할 것을 목적으로 동의안이 제출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¹⁾에 따르면 최초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 4회차 민간위탁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양천 아이존은 2009년 개소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 8년간 운영해 온 시설임.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2층

※ 시설규모 : 118평(전용면적 349.5m², 지상 2층, 법인소유)

※ 개원일자 : 2009년 4월 24일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내용

- 1차 : 2009.4.24 ~ 2012.4.23. (3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간 연장 2012.4.24. ~ 2012.6.30.)
- 2차 : 2012.7.1 ~ 2014.6.30 (2년, 재계약)
- 3차 : 2014.7.1 ~ 2017.6.30 (3년, 재계약)
- 4차 : 2017.7.1. ~ (3년, 재계약 예정) 동의안 제출 사유 발생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사무의 내용과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정신보건법」 제3조²⁾에 따른 아동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본 동의안의 대상인 양천 아이존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임과 동시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살펴봐도 본 동의안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양천 아이존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제1항은 시장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3 재계약 대상자의 운영 적절성 검토

- 본 동의안이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안된 것이기에 재계약 대상자인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하 '어린이재단')의 양천 아이존 사업수행의 적법성 준수 및 전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있음.

가. 운영의 적법성 준수 관련

- 양천 아이존은 2016년 집행부의 지도점검 결과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전문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법인 이사회회의 연간 개최횟수가 작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연간 법인 이사회회를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3회 실시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결과는 나와 있지 않으나, 단순 지적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① 퇴직연금의 적립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구분)을 위배하였다는 지적, ② 시설간 인사이동시 입사 및 퇴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 ③ 결산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 ④ 사회보험부담금을 위법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집행부(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의 회신에 따르면 회계 감사의 지적 사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단순 지적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바 있음.

<표> 양천 아이존의 적법적 운영 성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법인이사회 연간 4회 이상이어야 하나 3회로 다소 미흡	-
퇴직연금의 명의 법인으로 잘못 가입되어 명의 변경 권고	서울시청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 위반이 아님.
시설간 인사이동시 입사 및 퇴사조치 미이행	서울시청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회계감사결과 이 부분은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법하지 않음. -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재단(어린이재단)에서 직접 채용하고 재단의 인사규정을 따른 결과임.
자산취득비 오류계상으로 시정 조치	내부기안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수정함.
보조금관련 사회보험부담금의 정산절차 미비	보수총액의 신고시기를 3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시정함. 위법성 없음.

나. 운영의 전문성 관련

- 아이존 등 정신보건 사업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실천과 그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인력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의 3개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성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인력구성을 보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종사자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정원은 44명인 바, 이중 행정요원은 관련분야 자격증을 지닌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육아휴직자와 이에 대한 체제인력은 관련분야

자격증을 지닌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이 외의 치료인력은 모두 관련분야 자격증을 지닌 석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음. 인력구성은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참고자료-① 참조)

-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이존의 설립목적인 ADHD와 그 외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통합적 개입서비스(부모상담, 자조모임 그 외), 지역연계 서비스(자원연계, 지역연계), 교육 및 평가(사례회의, 직원교육, 사업보고서 발간), 홍보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② 참조)
- 양천아이존은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ADHD 균형발달 숲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금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한 바 있음.

<표> 양천 아이존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3)

회기	부모&아동 산림치유	아동 사회기술훈련	회기	부모 양육기술훈련
1회기(09.23)	사회성향상 숲속 놀이훈련	친구사귀기 프로젝트	1회기(11.29)	ADHD의 오해와 진실
2회기(09.30)	부모자녀 관계개선 숲속 놀이훈련	정서안정 프로그램	2회기(12.06)	
3회기(10.21)	사회성향상 숲속 놀이훈련	수업참여 프로젝트	3회기(12.13)	부모역량강화 교육
4회기(10.28)	부모자녀 관계개선 놀이훈련	수행기능 증진활동	4회기(12.20)	

-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국립정신건강센터 주최의 ‘2016년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모’에서 ‘심리운동을 통한 몸과 마음이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은 외부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참고자료-③ 참조)

3) 2016년 한국안센에 프로그램 제안하여 사업비 지원받았으며, 한양대병원, 숲연구소, 양천 아이존, 공동 기획하여 수행함

- 양천 아이존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양천 아이존은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반에 공개한 바 있으며 특히, 아동의 발달변화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적 실천영역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천 아이존 이용 아동의 행동변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로 양천 아이존이 과학적 실천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관련하여 2015년에 「양천 아이존 -3개년 사업보고서」, 「양천 아이존 이용 아동 및 부모 행동 변화에 대한 양적 평가 연구: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 -양천 아이존 이용아동과 보호자의 행동 변화 효과성을 중심으로-」, 「양천 아이존 이용 아동 부모의 질적 평가 연구: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이존 사업의 질적 평가 -초점집단면접(FGI)를 중심으로-」 등을 수탁법인을 통해 발간한 바 있음.

<표> 양천 아이존의 주요 평가척도

목표	성과지표	대상
ADHD 문제행동 감소	한국어판 ADHD 평정척도 (K-ARS)	부모
	포괄적 평정척도(ACTeRs)	부모, 치료자
	SKAMP, K-ARS	부모, 치료자
사회기술 향상	또래관계기술척도(PRSS)	아동
	사회적기술평정척도 (SSRS)	부모, 치료자
일상생활 적응	일상생활 적응 (K-LPS)	부모
학업 수행 평가	학업수행평가	부모
부모자녀 관계 향상	한국어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PBI)	아동, 부모

4 종합의견

- 양천 아이존은 지난 3회차의 수탁기간 동안 운영의 적법성 준수 측면에서 단순 지적 사항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외부의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고, 전문성을 지닌 인력에 의한 과학적인 실천을 통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됨.
 - ※ 양천 아이존의 성과는 수탁법인인 어린이재단의 공신력과 재무적 능력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적인 운영과 우수한 사업성과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27
----------	------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양천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 개요

- 시설명 : 양천 아이존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2층
- 시설규모 : 118평(전용면적 349.5m², 지상 2층, 법인소유)
- 개소일 : 2009. 4. 24.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초등학생

나. 주요 위탁내용

-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대표자 : 지훈상)
- 위탁기간 : 3년(2017.7. 1 ~ 2020.6.30)
- 위탁업무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소요예산 : 395,025천원 (2017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현황
 - 1차 : 2009.4.24. ~ 2012.4.23. (3년 계약, 공개모집)
 - ※ 2012.4.24.~2012.6.30. 기간연장
 - 2차 : 2012.7.1 ~ 2014.6.30 (2년, 재계약)
 - 3차 : 2014.7.1 ~ 2017.6.30 (3년, 재계약)

라. 추진 필요성

- 직영으로 운영시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 대체를 위해

추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장비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 적정
(보건정책과 2017. 2.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2017. 3. 9.)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김 종 금 (☎ 2133 - 7549)